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와 설치 안전기준,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및 미끄럼 안내표지 설치 등을 규정한 「주차장법」이 개정(법률 제16831호, 2019. 12. 24. 공포. 2020. 6. 25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기계식주차장의 안내문에 포함될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경사진 주차장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강화(안 제4조·제6조·제11조)

경사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,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

나.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(안 제6조)

40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과속방지턱,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 설치 의무화

다.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사진 주차장 안전 지도점검(안 제4조·제6조·제11조)

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범위에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, 대규모 주차장의 보행안전시설 등을 포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제목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수급실태조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·제2항·제3항·제4항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수급실태조사”로 한다.

제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3(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 등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(이하 “안전관리 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 여부
 2.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
 3.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, 제1조의2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구역은 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, 이 경우 진출입로도 조사구역에

포함하여야 한다.

제4조 제목 중 “구조·설비기준”을 “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구조·설비기준”를 “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·제4항·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경사진 곳에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, 고임돌, 그 밖에 고무,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경사진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시
2.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 작동
3. 고임목, 고임돌, 고무, 그 밖에 고무,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의 고정
4.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기
5. 그 밖에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

⑤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노상주차장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구조·설비기준”을 “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13호 중 “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”를 “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11호”를 “제1항제11호·제13호 및 제15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,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“구조·설비기준“ 을 ”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“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”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·제10호·제12호·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“을 ”제5조제6호, 제7호 및 제9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·제10호·제12호·제13호·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“으로 한다.

제12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

제16조의17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노상·노외·부설 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경사진 곳에서 설치된 주차장이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해당 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.

시설 현황을 대조·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 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(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관리한다.

<신 설>

- 수급실태조사

제1조의3(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 등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(이하 “안전관리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주차장의 구조 · 설비 및 안전 기준 충족 여부
 2.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
 3.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 ·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②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, 제1조의2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

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

준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
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은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4. (생략)

가.·나.(생략)

5.~8.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있다.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구역은 주차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, 이 경우 진출입로도 조사구역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4조(노상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

안전기준) ① -----
-----구조·설비 및 안전기
준-----.

1.~4. (현행과 같음)

가.·나.(현행과 같음)

5.~8.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경사진 곳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주차된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임목, 고임돌, 그 밖에 고무,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

<신 설>

제5조(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
계획기준) 법 제12조제1항 및
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
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
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8. (생략)

<신 설>

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미
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자동차 운
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
하여야 한다.

1. 경사진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
시

2.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 작동

3. 고임목, 고임돌, 그 밖에 고무,
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
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의 고정

4.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
로 돌려놓기

5. 그 밖에 주차된 자동차가 미
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

⑤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
당 지역의 노상주차장이 설치기
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
매년 한 번 이상 지도·점검하여
야 한다.

제5조(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
계획기준)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

제6조(노외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· 12. (생략)

13.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4. (생략)

<신설>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

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6조(노외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) ① -----

-----.

1. · 12. (현행과 같음)

13.-----

----- 제4조
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미끄럼
방지시설 설치 또는 비치 및 미
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
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
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-----.

14. (현행과 같음)

15.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,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----- 제1항

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~ ⑦ (생략)

제11조(부설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·제10호·제12호·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. 다만,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② ~ ⑥ (생략)

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)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(부설

제11호·제13호 및 제15호-----

-----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부설주차장의 구조·설비 및 안전기준) ①-----

제5조제6호, 제7호 및 제9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·제10호·제12호·제13호·제15호 및 같은 조 제2항-. -- -----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) ①-----

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제16조의17(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) ① (생략)
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~ 4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의17(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6

	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노상·노외·부설 주차장의 구조·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 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경사 진 곳에서 설치된 주차장이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, 해 당 주차장의 설치·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 지를 갖추어야 한다.
--	--